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의8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9(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,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기금이 같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팩토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매출채권의 매입조건을 해당 중소기업자와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한다.

④ 기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자와 채무자의 경영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기금은 제3항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고,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9조(회의참여의 제한) 위원회의</u> <u>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</u> <u>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</u> <u>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</u> <u>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</u> <u>하지 못한다. 다만, 전반적인 운영</u> <u>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</u> <u>한다.</u>	<u><삭 제></u>
제19조의8(보증연계투자) ① (생 략) ②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 억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보증연계 투자 금액은 기금이 해당 기업 (매출액 증가율, 기술력과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신 용보증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9조의8(보증연계투자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, <후단 삭제>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9(중소기업팩토링의 운</u> <u>용규모, 방법 및 절차)</u>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<u>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는</u>

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기금이 같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팩토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매출채권의 매입조건을 해당 중소기업자와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한다.

④ 기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자와 채무자의 경영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기금은 제3항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고,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.